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 운영 규정

2025. 12. 30.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지부는 정관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지부업무는 정관 제5조에 규정된 사업과 조합의 업무지시를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지부의 명칭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00지부라 칭한다.

제3조 관할구역

지부의 관할구역은 제1지부는 부평구, 계양구 제2지부는 연수구, 미추홀구, 제3지부는 남동구, 제4지부는 서구, 중구, 동구, 제5지부는 강화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인천 관내에 둔다.

제5조 사업

지부의 사업은 조합 정관 제5조(조합의 사업)와 조합 및 관계기관의 행정지시사항등 지부원의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지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5조(조합의 사업)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진흥 발전과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조사 연구사업.

3. 조합원의 교육 훈련
4.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의거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6. 교통문화정착운동 및 자율화 업무,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참여
7. 조합원의 공제 및 복지사업
8. 기타 본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기구

지부에는 지부장 이하 민원실장 1명,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기타 필요사항은 지부장이 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7조 경비 및 보수

지부장 및 민원실장은 공제업무 외에 조합의 업무위임이 있을 시 운영규정 및 조합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 지부장 및 민원실장(선출방식, 임기, 역할)

지부장 및 민원실장 선출방식, 임기, 역할 등은 조합 정관 제22조(지부장)에 의한다.(단, 기타 제반 사항은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지부장 및 민원실장 해임

조합 정관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해임사유에 해당된다.

1.부정행위 적발시
2.공장알선 및 병원알선 3회 발생시
3.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 발견시
4.기타 부적절한 행위 발견시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대의원회 승인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본 규정 이외의 제반 사항은 조합 정관에 준한다.